

2023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 8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접수, 7월 27일 온라인 설명회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8월 14일(월)부터 8월 21일(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 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해 7월 27일(목)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 붙임 1. 2023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1부.
2. 위치정보사업 신청서류 및 적정성 검토 기준 1부.
3. 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1부. 끝.

담당 부서	이용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윤정 (02-2110-1520)
	인터넷이용자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이민재 (02-2110-1528)

< 붙임 1 >

2023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 개요

○ 등록접수 일정(안)

구분	접수기간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4차	8.14.(월) ~ 8.21.(월)	7.27.(목)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를 통해 접수기간 중 온라인 신청 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원본 1부, 사본 10부, 이동식저장매체 1벌)

○ 적정성 검토 절차 : 신청서 접수 → 임원 결격사유 확인 → 자문위원 구성 → 적정성 검토 → 등록여부 결정 → 등록증 교부(약 2개월 소요)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대상, 등록 절차 및 신청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위치정보지원센터(02-588-0185, www.lbsc.kr)에서 연중 상담·안내 지원

○ 관련 규정

구분	관련 규정
등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 제2022-05호)
인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7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 제2022-06호)

□ 방문·우편 접수처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전화 : 02-2110-1528

< 붙임 2 >

위치정보사업 신청서류 및 적정성 검토 기준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원본 1부, 사본 10부, 이동식저장매체 1벌)
- 사업계획서 : 요약문(25쪽 이내)과 본문(200쪽 이내)으로 작성
 -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 [별표 1]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본문은 법인요건(1권), 사업개요(2권), 시스템의 구성(3권),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4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 (법인요건) 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상태 등
 - (사업개요) 제공하려는 사업의 내용 등
 - (시스템의 구성·운영) 소요설비, 시스템 체계 등 ※ 위치정보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서버 이용 가능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등

○ 적정성 검토 기준

세부심사기준	평가
1. 재무구조의 건전성	
가. 수익성(3점) : 총자산 영업이익률	적합/ 부적합
나. 안전성(3점) : 부채비율	
다. 성장성(2점) : 매출액 증가율	
<small>※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별첨 [양식3]에 의거 작성한 서류)로 대체 ※ 1.재무구조의 건전성 항목의 경우 총 8점 만점 중 4.8점 이상을 얻은 등록신청법인을 적합으로 판정함</small>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적합/ 부적합
나.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
다. 위치정보시스템 품질보증의 적정성	"
3.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적합/ 부적합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

3) 위치정보보호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인증 및 절차	적합/부적합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계획	”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 제공 조치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계획 등)	”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방통위고시 2022-05호) [별표 2]

○ 등록기준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서 모두 적합판정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

○ 신청서류 : 인가신청서 1부,

계약서(양수·양도, 합병·분할합병)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원본 1부, 사본 10부, 이동식저장매체 1벌)

○ 사업계획서 : 요약문(30쪽 이내)과 본문(200쪽 이내)으로 작성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방통위고시)」 [별표 1]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본문은 등록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1권), 사업개요(2권), 시스템의 구성·운영(3권),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4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 (기본사항) 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상태 등
- (사업개요) 양수되는 사업의 세부 계획 등
- (시스템의 구성·운영) 소요설비, 시스템 체계 등 ※ 위치정보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서버 이용 가능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등

○ 적정성 검토 기준

심사사항	구분	세부심사기준	평가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계량 평가	가. 최근 3년간 재무지표의 건전성 1) 수익성 : 총자산 영업이익률 2) 안전성 : 부채비율 3)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별첨 [양식3]에 의거 작성한 서류, 이하 '근거자료'라 함)로 대체함	40 40 20	
		나.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1)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2)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3) 위치정보시스템 품질보증의 적정성	100 50 50	
	비계량 평가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3) 위치정보보호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50 50 50 50 50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인증 및 절차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계획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요구에 대한 기술적 수단 제공 조치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계획 등)	50 50 50 50 50	
가.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정보발송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50		
나.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등의 통지 계획의 수립 여부		50		
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의 적정성		50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의 이용,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비계량 평가	가.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정보발송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나.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등의 통지 계획의 수립 여부 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의 적정성	50 50 50
총점				1,000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 방법」 (방통위고시 2022-06호) [별표 2]

< 붙임 3 >

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는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

① 온-나라 PC영상회의('23.7.27.(목) 14:00~)

○ 참여방법 : 홈페이지 접속(<http://vc.on-nara.go.kr>) → 민간 공공기관 영상회의 클릭 → 이름 및 코드 번호 입력

- 설명회 당일 오전까지 참석 수요를 제출*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입장을 위한 코드번호를 당일 영상회의 개설(13:45) 후 개별 안내 예정

* 사업자명과 코드번호를 안내 받을 메일 주소를 위치정보지원센터(LBS@kcup.or.kr)로 제출



② 위치정보지원센터(LBS@kcup.or.kr, 02-588-0185)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대상, 등록 절차 및 신청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연중 상담·안내 지원